



양계자조금사업의 당위성

“스스로 돕는 자금”



김 정 주 건국대학교 생명자원 경제학과 교수

자조금이란 “스스로 돕는 자금”이라는 뜻으로 양계농가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판매촉진이나 연구진행에 쓰고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런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세금이나 부담금과는 달리 출하한 물량에 따라 자금을 각출하되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량의 돈을 모아 적립했다가 닭고기나 계란의 소비촉진이나 조사연구에 쓰는 사업이다. 미국의 체크오프(check-off) 제도를 본따서 만든 우리의 축산물 자조금 제도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각출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소위 임의 자조금 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식”의 임의 자조금제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자조금 사업에 의한 광고나 연구개발 효과는 모두 함께 누리면서도 그 비용은 일부가 부담하게 되어 “공차 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의무 자조금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의무자조금제도는 임의 자조금 제도와는 달리 해당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자조금사업에 참여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5월에 축산물에 대한 의무자조



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제정·공포되면서 축산업 의무 자조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양계산업에서는 아직 의무 자조금제도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른 축종에 비하여 그 구조가 복잡하고 법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육계산업은 계열화 방식의 생산이 전체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육계 계열화 사업 현장에는 마치 노사가 대립하는 노동현장을 방불케 하는 대결구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무 자조금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조금 부담 비율을 놓고 사육농가와 계열주체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육계계열화 체계에서는 생산물인 닭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계열주체에 있으면서도 자조금관리는 사육농가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위원회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므로 자조금을 사육농가가 전액 부담할 수도 없고(생산물 소유권은 계열주체에 있기 때문), 그렇다고 계열주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자조금 관리가 사육농가에

의하여 주도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적절한 비율에 의한 부담이 바람직하겠으나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정한가를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육계 사육 농가를 대변해 줄 기구인 생산자단체가 양계협회, 계육협회, 농협중앙회로 3분되어 구심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육농가들은 당연히 철저한 자기방어를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육계자조금 출범이 늦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란의 경우 집하장이나 계란가공공장 등에서 자조금이 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자조금법에서는 폐계 도축장에서 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산란노계의 경우 최종산물이 아니라 폐기물(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조금법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산란 노계 값이 떨어질 경우 도계장으로 출하하는 것 보다 자체에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효과적인 자조금 조성이 어려울 것이다. 결국 계란자조금의 거출은 집하장이나 가공공장, 상인들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집하장 출하물량이 10~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 사료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사료에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으나 사료업계의 협조여부가 관건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란 양계분야는 사료회사로 하여금 채란양계 자조금 거출 기관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하고 다시 종계/부화장업계와 접촉하고 있으나 진전이 어려운 실정이고 폐계 도계장에서 자조금을 부과토록 명시한 법률을 고쳐야 하는 문제도 국회를 동원해야 하므로 결코 쉽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양계산업 자조금 해법은 없는 것인가?

육계는 생산의 70-80%를 계열화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육계계열화 사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산업 평화를 논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가 공동운명체적 공감대를 갖는 분위기는 아닌 듯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

구도가 장기화 되면 될 수록 그 폐해는 고스란히 육계사육농가와 계열주체로 귀속되기 마련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계열농가와 계열주체들이 사소한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서 설득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현행 축산 자조금 법의 미비점을 고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첫째로, 현행 축산분야는 축종마다 자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범인화한다면 "육상육"의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축종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더라도 사무국은 통합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축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산 축산물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입업자가 현행 법률에는 자조금사업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 물론 소비촉진 운동이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만을 홍보할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하겠지만 홍보에 관한한 개별 품목 광보보다는 통합광고의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고 보면 그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입업자를 포함시킴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셋째, 채란양계의 경우 의무 자조금 사업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것은 자조금 거출을 위한 길목이 적절하지 못한 때문이므로 계란의 유통체계를 계란 집하장으로 집중시켜 집하장에서 가격결정은 물론 계란 품질검사까지 수행하게 하여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는 계란이 유통될 수 없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조금은 여기에서 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계**